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약사법」 개정(법률 제17208호, 2020.4.7.공포, 2023.4.8.시행)으로 약사로서 전문약사가 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 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됨

이에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인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83조3에 따라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과목)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로 한다.

제3조(교육과정)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총 3년 이상의 실무경력(수련 교육 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전문과목 수련 교육(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 기준 5년 이내)

제4조(자격인정) ① 전문약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3조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약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관리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자격증의 발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그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과목의 중별에 따라 전문약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전문과목 등의 표시) 전문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전문과목의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이라는 글자와 “전문약사”를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시자격에 대한 특례) ① (사)한국병원약사회 주관 전문약사 자격을 유지하는 자는 전문약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전문과목 수련 교육 1년(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년도 기준 5년 이내)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면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② 본조 제1항은 시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조(목적) 이 영은 약사법 제83조3에 따라 전문약사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과목) 전문약사의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로 한다.
	제3조(교육과정) 전문약사 자격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총 3년 이상의 실무경력(수련 교육 기관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의
전문과목 수련 교육(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 기준 5년 이내)

제4조(자격인정) ① 전문약사의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3조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한
약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
하는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
한 사람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시험의 관리 등
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자격시험의 방법, 응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 (자격증의 발급)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그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
에 전문과목의 종별에 따라 전문
약사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 (전문과목 등의 표시) 전문
약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전문
과목의 명칭과 함께 “전문과목”
이라는 글자와 “전문약사”를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응시자격에 대한 특례) ①
(사)한국병원약사회 주관 전문
약사 자격을 유지하는 자는 전문
약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u>간주하며, 해당 전문과목 수련</u> <u>교육 1년(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u> <u>년도 기준 5년 이내)에 관한</u> <u>증명서를 제출하면 전문약사</u> <u>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한다.</u> ② 본조 제1항은 시행일로부터 <u>3년간 유효하다.</u>
--	--